

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 (이하“차주”)는 대주로서 담보제공인등과 2018 년 2 월 28 일자 대 _____)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(이하 “대출약정서”라 하며, 이후 수정 또는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)를 체결하였다.

한편, 매도예정인과 매입확약인은 대출약정에 따라 매도예정인이 차주에 대하여 보유할 예정인 _____ 범위 내의 대출채권(이하 “본건 대출채권”)의 매입확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.

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.

제 1 조 용어의정의

본 약정에서 사용된 용어들은, 본 약정에서 달리 정의된 용어를 제외하고는, 대출약정 및 업무위탁계약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.

1. “기준일”이라 함은 _____ 매입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.

2. “매입사유”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유를 말한다.

가. 대출약정에 따라 본건 대출채권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, 또는 대출약정에 따라 본건 대출채권의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

3. “매입실행일”은 다음 각 목과 같다..

가. 본조 제 2 호 가목에 의한 매입사유 발생시: 기준일 직후에 도래하는 대출약정서상의 이자지급일 또는 대출만기일(기준일이 대출약정상의 이자지급일 또는 대출만기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)을 말한다.

나. 본조 제 2 호 나목에 의한 매입사유 발생시: 기준일을 매입실행일로 본다.

본 약정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본 약정서 3 통을 작성하여 서명(기명날인)한 후 매입확약인 및 매도예정인이 각각 1 통씩 보관하고,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1 통씩 보관한다..

매입확약인

주식회사 [redacted] 건설

대표이사 : [redacted]

매도예정인

주식회사 테일리펀딩 대부

서울시 송파구 중민로 66 가든파이버 라이프동 L7061-7064

대표이사 : [redacted]

담보제공인

1. 주식회사 에이엔 [redacted]

대표이사 : 박 [redacted]

2. 주식회사 에이치 [redacted]

대표이사 : 한 [redacted]